

제3대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회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금지 안내

○ 기부행위의 정의 (법 제32조)

- 선거인¹⁾이나 그 가족²⁾,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·운영하고 있는 기관·단체·시설³⁾에 대하여 금전·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, 이익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

1) 선거인

- 해당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자로서,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*를 포함
*해당 단체에 가입되어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및 해당 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자

2) 선거인의 가족

- 상기 1)항의 선거인의 배우자,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, 자녀, 손자, 외손자 등)과 형제자매,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

3) 상기 1)항 및 2)항의 선거인과 그 가족이 설립·운영하고 있는 기관·단체·시설

- 기부행위란 상대방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이나 다름없는 경우를 말하며, 유상이라 할지라도 그 것으로 인해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기부행위로 봄.
- 또한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사후에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약속만으로 기부행위 위반죄가 성립됨.

○ 기부행위 제한기간 (법 제34조)

-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
 - (당초 / 2024.7.30.까지 적용)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

· (개정 / 2024.7.31.부터 적용)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

※단, 부칙에 의거하여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, 2024.7.30.까지의 임기만료일 1년 이내 기부행위는 법령상 저촉되지 않음.

- 정관 등에 따른 보궐선거: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

○ 주체별 제한내용 (법 제35조) ※ 아래 '후보자'는 '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'를 포함

분류	제한주체	제한내용
직/간접 기부행위	후보자 및 그 배우자, 후보자가 속한 기관·단체·시설	·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.
대리 기부행위	누구든지	·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, 하게 할 수 없음. ※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,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.
기부행위 수락	누구든지	·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상기 조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,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음.
기부행위 유도	누구든지	· 누구든지 상기 행위에 관하여 지시·권유·알선·요구할 수 없음.

○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

구분	허용내용
1. 직무상의 행위	가. <u>기관·단체·시설(위탁단체 제외)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·물품을 그 기관·단체·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(포상 포함)</u> 나. 위탁단체가 <u>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·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(포상 포함)</u> 다. <u>물품구매·공사·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</u> 라. <u>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·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</u>
2. 의례적인	가. 「민법」 제777조(친족의 범위)에 따른 <u>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·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</u>

구분	허용내용
행위	<p>☞ 친족의 범위 :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, 배우자</p> <p>나. <u>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(5만원 이내)에서 축의·부의금품(화환·화분을 제외함)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</u></p> <p>☞ <u>화환·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</u></p> <p>다. <u>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(3만원 이내) 또는 답례품(1만원 이내)을 제공하는 행위</u></p> <p>라. <u>소속 기관·단체·시설(위탁단체 제외)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·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(3만원 이내)을 제공하는 행위</u></p> <p>☞ 이 경우 위탁단체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이나 수지예산서에 근거가 있어야 함.</p> <p>마. <u>친목회·향우회·종친회·동창회 등 각종 사교·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</u></p> <p>바. <u>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·성당·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(물품 제공 포함)하는 행위</u></p>
3. 구호적·자선적 행위	<p>○ 공직선거법 제112조(기부행위의 정의 등)제2항제3호에 준하는 행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</u> - 「재해구호법」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(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) 및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<u>천재·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</u>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<u>장애인복지시설(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)에 의연금품·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</u>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인 <u>중증장애인에게 자선·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</u> - <u>자선사업을 주관·시행하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언론기관·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·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</u> ☞ 다만, <u>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·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</u> - 자선·구호사업을 주관·시행하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기관·법인을 통하여 <u>소년·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·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</u> -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·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·소녀가장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무의탁노인, 결식자, 이재민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<u>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</u>

구 분	허용내용
	<p>☞ 다만, <u>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·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</u>는 제외</p> <p>- <u>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(야학을 포함한다)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</u></p>
4. 그 외	<p>○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</p>